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신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 보험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김철욱(6575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6796호

시행일자 2024. 9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(2024. 9. 9.)
- 3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내용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
- 시행일 : 2024. 9. 13.

붙임: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



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